제재내용 공시

1. **조합명** : 강원고성군수협

2. **제재조치(요구)일** : 2026. 06. 12.

3. **제재조치(요구)내용**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원	견책(2명), 변상(3명), 경고(7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**제재대상 사실**

□ 신용대출 취급 부적정

○ 가계일반자금대출 취급시 직장가입자로 최근 3개월동안 동일한 종류의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아 취급이 어려움에도 이를 부적정하게 취급함.

□ 영업점장 특인대출 취급 부적정

○ 가계일반자금대출 취급시 영업점장 특인대출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취급하였음.

□ 대출 업무처리 부적정

○ 공공시설자금대출 취급시 중요 심사서류 확인 등 대출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하였음.

< 관련법규 >

○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제1편 제17조(대출실행절차 및 대출 신청시 징구 서류), 제42조(승인대상 대출금), 제43조(대출영업점 업무처리), 제44조(승인신청서 제출서류), 제45조(승인대출금 업무처리), 제48조의6(업무처리), 제54조(심사사항), 제80-3조(대출한도 산출), 제87조 (채무자 자격제한), 제396조(공동대출 협약), 제399조(주간조합 보고 등)

○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제2편 제18조(한도전략), 제36조(연소득 산정방식), 제4장 제20조(영업점장 특인대출)

○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제3편 제18조(신용평가 방법), 제21조(신용등급 산출방법)

○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제5편 제164조(채무관계자), 제165조(신용조사), 제166조(연대보증), 제170조(대출한도 및 담보취득방법 등)

○ 한국주택금융공사「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」

○「상호금융 담보물 가격조사 업무방법(예)」제32조(가격조사서 또는 감정평가서 심사), 제35조(외부 감정평가서의 심사)

○「문서 규정」제3조(정의), 제21조(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등)

○「회원조합 감사규정」제31조(직원에 대한 제재), 제32조(기타 조치)

○「회원조합 징계·변상업무처리규정」제12조(징계양정기준) <별표>징계양정기준표